
외국인력 고용관련 업계 건의

2018. 9. 12.

K-BIZ 중소기업중앙회



목 차



1.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(E-7-4) 제도 개선	3
2.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	4
3. 출입국·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	5
4. 인천출입국·외국인청 사증심사 신속처리 요청	6
5. 외국인등록 인터넷예약제와 방문처리 병행 시행	7
6. 자동차정비업 판금·도장분야 특정활동(E-7) 허용	8

▶ 건의자 :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양태석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중소기업계는 ‘숙련기능인력 점수제(E-7-4)’ 도입으로 3D 업종의 고질적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동 제도 시행을 환영한 바 있음
- 그러나 일반 점수제 운영규모가 총 400명으로 매우 적고, 평가 항목 기준이 높아 국내 외국인근로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
 - 뿌리산업은 청년층의 취업기피로 타 산업 대비 기능·기술인력 부족규모가 가장 큰 산업이며 국내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단순노무 외국인 근로자 수의 지속 증가로 E-7-4 규모 확대 절실
 - * 기술·기능인력부족률 : 중소기업업 1.74% vs 뿌리 2.72%
 - * 외국인 종사자 연평균 증가율('12~'15) : 중소기업업 2.6% vs 뿌리 9.2%
 - 점수제 평가항목 중 20점 배점인 한국어능력 기준은 2급 ~ 5급 이상 득점해야 가능하나,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최하등급인 1급도 획득하기 매우 어려운 현실임

※ 안산의 A 도금업체에 종사하는 7명의 외국인근로자는 단 한명도 2급 이상의 한국어능력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여 E-7-4 비자 취득에 실패

□ 건의사항

- E-7-4 대상자 규모 확대 및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별도 쿼터 운영
(현 행) 일반(400명), 75점 이상 고득점자(100명), 고용창출우수기업(100명)
(개선안) 일반(600명), 75점 이상 고득점자(200명), 고용창출(200명), 뿌리산업(200명)
- 뿌리산업 등 한국어능력 기준(TOPIK 또는 KIIP) 차등 적용

(현 행)	5급 이상	4급 이상	3급 이상	2급 이상
	20	15	10	5

(개선안)	구분	뿌리산업 및 농·축산·어업 분야				일반 제조업, 건설업 분야 등			
		4급이상	3급이상	2급이상	1급이상	5급이상	4급이상	3급이상	2급이상
	배점	20	15	10	5	20	15	10	5

2

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

▶ 건의자 : 경인주물공단사업협동조합 이사장 양태석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소재·부품 개발의 밑바탕이 되는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산업은 3D 이미지와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청년층의 취업기피 지속 및 인력수급의 어려움*으로 외국인근로자 추가 확보가 절실함

* 인력부족률 : 중소제조업 1.3% vs 뿌리 2.0%

* 기술·기능인력부족률 : 중소제조업 1.74% vs 뿌리 2.72%

- '17. 11월, 「출입국관리법」시행규칙 개정*으로 외국인 체류기간이 최대 14년 6개월에서 9년 8개월로 단축

* 비전문취업(E-9)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의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

- 이러한 외국인 체류기간 단축은 근로자 숙련 단절 및 업무연속성 저하로 이어져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中企 생산성을 악화시키는 결과 초래

- 청년층은 물론 고령 및 여성인력도 뿌리산업에 취업을 기피하고 있어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가 자국민 일자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

*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유 : 내국인을 구할 수 없어서(80.0%), 인건비 절감(8.3%), (분회, 「2018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 애로실태조사 보고서」, 2018. 7월)

□ 건의사항

- 뿌리산업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 기간 연장 범위 확대(2년 → 3년)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조건 완화(5년 → 6년)

-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내국인 고용이 어렵다고 인정한 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특례 신설 (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의 2 제1항 및 「출입국관리법」시행규칙 제17조의3 제3항 개정)

3

출입국·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

▶ 건의자 : 보문열처리 김영애 직원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외국인근로자의 근로계약해지, 사망, 무단이탈, 고용사업장 정보변동, 지사간이동 등 고용변동 사항과 관련한 제 신고*는 출입국관리청에 신고를 하면 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신고사항을 고용노동부로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통합시스템이 일부 운영 중에 있음

* 고용·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서

- 그러나, 고용허가기간연장, 체류기간연장 등 기간연장 관련 업무처리 시에는 고용복지⁺센터와 출입국관리청을 각각 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음
- 또한, 일부 지역은 외국인 활용 업체의 관할 출입국관리청이 지리적으로 인근 타 출입국관리청보다 더 멀리 소재하고 있어 가까운 타 관리청에서 기간연장 신고를 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진 관할청까지 방문하여 업무수행을 하는 불편을 초래함

□ 건의사항

- 고용허가기간연장 및 체류기간연장 업무의 고용복지⁺센터와 출입국관리청 원스톱서비스 확대 운영
- 관할 출입국관리청 외 다른 출입국관리청에서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 신고가 가능하도록 업무처리 방법 개선

4

인천출입국관리청 사증심사 신속처리 요청

▶ 건의자 : 중소기업중앙회 문철홍 외국인력지원실장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본회는 고용허가제 행정대행기관으로서 업체의 대행신청을 받아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업무를 대행하고 있음
-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업무는 대한민국 비자포털(www.visa.go.kr) 사이트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사증발급신청을 하고 있으나
-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, 김포, 부천인 대행신청업체 중 88개 업체가 아직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증발급인정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(최장 95일) 심지어 심사 단계조차 진행되지 않는 업체도 있음

< 인천출입국·외국인청 사증발급인정서 승인 지연 현황 >

(2018. 8. 17. 현재)

구 분	미승인 업체수	최장 지연일수	비 고
신규근로자	61개	95일	
성실근로자	27개	100일	
합 계	88개		

- 또한, 인천출입국·외국인청은 본회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고 직접 신청한 업체의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 건보다 먼저 처리하여 사증발급신청을 본회로 대행한 업체의 사증발급승인 지연에 대한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임

□ 건의사항

- 인천출입국·외국인청 사증발급 관련 인원 보강 또는 업무량 조정 등을 통하여 조속한 사증발급심사 방안 마련 및 시행

▶ 건의자 : 주식회사 진현메탈 박채문 대표이사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출입국관리법은 사업체가 신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·외국인청에 외국인근로자를 동행·방문하여 지문 날인하고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
 - * 입국일로부터 90일까지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9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2016년부터 출입국·외국인청은 외국인이 체류관련 업무를 위해 오랜 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(하이코리아)를 통해서 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해당 일에 출입국·외국인청을 방문해 민원 처리하는 '사전 예약제'를 시행 중임
- 그러나, 출입국·외국인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 후 방문토록 하고 있어, 인터넷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영세 사업체나 인터넷 활용이 부정확한 중·노령의 사업주의 경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음

□ 건의사항

- 출입국·외국인청 방문 시, 인터넷 환경이 미비한 영세 중소기업 등을 위해 인터넷 예약 없이 오프라인(예 : 팩스, 전화 등)으로도 신청 및 등록을 할 수 있는 방안 마련

▶ 권의자 :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 고재성 본부장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자동차정비업의 판금·도장분야는 섬세하고 고속런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, 특히 수입차량 증가(전체의 약8% 등록)와 숙련된 정비를 요하고 있으나, 아직도 자동차정비업 3D업종 인식 및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전문직 내국인력 수급에 많은 애로 발생

< 수도권지역 1·2급 132개 업체 분야별 인력구성비 실태조사 결과 >

(단위 :명, %)

구분	사무직	정비	판금	도장	기타
인원	401	430	330	340	197
비율	23.6	25.3	19.4	20.0	11.6

* 자료 : 서울자동차정비조합, 2014년 9월

* 뿌리산업 기술인 판금·도장인력 비중이 사무직과 정비 인력 비중 보자 더 낮음

- 고용노동부도 자동차정비업의 판금·도장분야를 제조업으로 인정하여 비전문 외국인력(E-9)을 활용*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정비사업자는 전문기술자를 필요하므로 사실상 대체인력으로 활용에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음

* (2014.12월) 고용노동부 정비업체 판금·도장분야 비전문외국인(E-9) 고용허가

- 정비업계는 신규 청년 종사자가 거의 없고 대다수가 40~50대 중·고령층으로 내국인 공급이 사실상 단절된 상태로 수년 내 인력난으로 인한 경영악화 또는 폐업 등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될 것인바, 정부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절실함
- 또한, 인력부족 사향을 악용한 판금·도장분야의 경력직 기술자가 일당제로 전환하여 단체로 높은 임금을 요구하는 등 비정상적인 취업으로 고용안정화를 저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

□ 건의사항

- <제1안> 자동차 판금·도장 분야 외국인 특정 활동(E-7) 도입 직종 선정
 - * (2017.11월 고용노동부 회신) 연구용역 결과 “자동차정비업”의 판금·도장분야에는 기능인력이 필요하므로 전문기술직(E-7) 발급이 적합하다고 판단
- <제2안> 자동차 판금·도장 분야 한시적(3년 동안) 특정 활동(E-7) 고용 확대(200명)
 - 3년간 한시적으로 판금(100명), 도장(100명) 분야 도입
 - * 자동차정비업이 비록 비전문 외국인력(E-9)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, 전문기술 작업공정 등 현실을 감안, 한시적(3년 동안)으로 자동차 판금·도장분야 만이라도 전문 기술외국인력 공급(E-7) 허용 확대